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17~9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설치된 아립예술제진흥기금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운용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아립예술제, 아립예술제위원회

다.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재원: 국비·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등
- 용도: 아립예술제 행사, 아립예술제 진흥사업 등

마.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
- 해당연도 운용이자의 수익범위에서 집행

바.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제12조)

- 위원회 구성, 위촉해제, 위원장 직무, 운영, 간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가용기금 7,500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6.~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아림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아림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림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림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의 출연금
4.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림예술제 행사
2. 그 밖의 아림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제8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아림 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따라 수립된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아림예술제 행사 등에 지원
- 관련 조문: 제6조 기금의 용도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군비	7,500	7,500	7,500	7,500	7,500	0
	소계(a)	7,500	7,500	7,500	7,500	7,500	0

3. 관련 의견

-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액(500,318천원) 및 이자발생액(7,500천원)에 대하여 1년마다 기금은 예치하고, 그 이자 발생분 내에서 사업추진
- 따라서 기존 조성된 기금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며 별도의 출연금은 발생하지 않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기금 예치: 500,318천원
-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이자분): 7,500천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유 태 정